

의안번호	제2832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8. 27.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2호
----------	--------

제출연월일: 2024. 8. 27.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개정)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에 문구 추가(안 제1조)

-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제3조)

라.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추가함(안 제4조)

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과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바. 법령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매년에서 3년마다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인지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

사. 법령에서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문장 재정비(안 제12조)

아.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여부, 종류 및 설치수 추가(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23889(2024. 06. 14.) 호]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해당조항: 제4조,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의 안전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제7조(관리인의 교육)제1항에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함(안 제7조) ▪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반영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977호

가) 예고기간: 2024. 05. 30. ~ 2024. 06. 1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복지증진 도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적용의 범위)”를“(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으로, “시·군의 조례에서”를 “조례로”로, “시설”이라 함은”을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4조 중 “하며”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하 “안전관리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6조제1항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를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전 경 사 진</div>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년도		관리책임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설치년도	관리책임공무원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구 모	부지 (m ²)	화장실 면적 (m ²)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주 체	설치주 체								직 급			
	관리주 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m ²)	화장 실 면적 (m ²)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 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 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남	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u></p>	<p><u>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u>복지증진을 도모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복지증진 도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3조(<u>적용의 범위</u>) ① (생략)</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u>관광진흥법</u>」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관</p>	<p>제3조(<u>적용 범위</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관광진흥법</u>」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에 따른 -----</p>

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시설 전부를 포함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 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 조례로
----- 시설이라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하 “안전관리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

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3년마다 1회 이상 -----
----- .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환경과장 최 정 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공포 2021. 7. 20. 시행 2023. 7. 21.>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1. 3. 31.>